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581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0. 5. 25.
- 다. 회부일 : 2020. 5. 2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전반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 추진

○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 규 모 : 대지 3,312㎡, 건물 연면적 7,406㎡(지하1층/지상4층)

○ 위치도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피부관리, 제과·제빵, 조리,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등), 생활체육(수영장, 헬스장), 상담실, 창업보육센터, 동부새일센터 등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0.10.1. ~ 2023.9.30.)

(6)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7) 소요예산 : 금1,680백만원(2020년 예산)

- 인건비 617백만원, 사무비 등 739백만원, 여성창업플라자 324백만원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예산조치 : 2020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별도평가체계에 따라 실시(여성능력개발원 주관)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동의안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sup>1)</sup>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sup>2)</sup>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 추진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등
-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sup>3)</sup>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서울시는 총 5개의 여성발전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시설장)	소재지	설립일	규모(m <sup>2</sup> )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 법인(대표)
					위탁기간
동부여성 발전센터 (최선희)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02.5.1.	대지 3,312 건물 7,406	3팀 14명 (소장1, 관리팀4, 교육팀4, 취업팀3, 여성창업플라자2)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이인자)  '17.10.1~'20.9.30.

- 3)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등) 제13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등) 제4조 제3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4.5.14.]

<별표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칭	위치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여울길 24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5길 17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센터명 (시설장)	소재지	설립일	규모(m <sup>2</sup> )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 법인(대표)
					위탁기간
서부여성 발전센터 (백인화)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97.12.3.	대지 1,551 건물 3,472	3팀 11명 (소장1, 교육팀4, 취업팀2, 행정지원팀4)	(사)대한어머니회 중앙회(박에스더) '17.10.1~'20.11.30.
남부여성 발전센터 (김현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79.10.26.	대지 15,067 건물 5,786	4팀 12명 (소장1, 취업팀3, 교육팀4, 관리팀4)	(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 '19.5.1~'22.4.30.
북부여성 발전센터 (주영미)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89.9.8.	대지 4,959 건물 4,910	3팀 12명 (소장1, 교육팀3, 취업팀4, 관리팀4)	(사)한국여학사협회(오민화) '19.5.1~'22.4.30.
중부여성 발전센터 (박주경)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86.12.16.	대지 2,010 건물 3,871	3팀 11명 (소장1, 교육팀4, 취창업팀3, 관리팀3)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강은경) '18.10.15~'21.10.14.

-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2002년 9월에 설립되어, 2005년 11월 '동부여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7년 7월부터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4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능력개발원과 분리하여 독립 운영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현황>

- '02.5월~'14.9월 여성가족재단
  - ※ '05.11월 동부여성플라자(명칭변경) → '07.7월 여성능력개발원(명칭변경)
  - '14.10월 조직개편 통해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분리
- '14.10월~현재(2회) (사)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으로 인해 2020년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업실적 총괄>

(단위 : 건, %)

연 도	구인자	구직자	취·창업자					취·창업률	비 고
			총계	상용	계약직	일용	창업		
~2020.5월	532	1,312	293	153	103	28	9	22%	
2019	1,949	3,372	1,486	601	595	253	37	44%	
2018	1,318	2,211	1,034	543	354	108	29	47%	
2017	1,666	2,680	1,462	684	450	257	71	55%	

### <일반교육 실적>

(단위 : 건, 명)

연 도	직업교육			생활문화		비 고
	과정 수	교육인원	수료인원	과정 수	교육인원	
~2020.5월	68	1,111	68	16	249	
2019	293	5,433	4,555	71	1,199	
2018	245	4,493	3,624	71	1,181	
2017	216	3,871	3,005	111	1,816	

### <기타 공모 사업(직업교육훈련) 실적>

(단위 : 건, %)

연 도	과정 수	교육인원	수료인원	취·창업인원	취·창업률	비 고
~2020.5월	2	33	-	-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여성능력 개발원 공모 사업 등
2019	12	240	218	179	82%	
2018	12	255	242	179	74%	
2017	13	277	256	116	45%	

### <지역복지 실적>

(단위 : 건, 명)

연 도	생활체육		한글교실		실버컴퓨터		비 고
	교육인원	수료인원	교육인원	수료인원	교육인원	수료인원	
~2020.5월	2,998	1,220	49	48	23	0	
2019	16,359	16,318	218	200	96	88	
2018	15,291	15,291	220	219	96	91	
2017	14,817	14,644	221	218	95	83	

### <창업지원사업 실적>

연 도	창업보육센터(A)		여성창업플라자(B)		총매출액 (A+B)	고용증가
	기업수	직원수	기업수	직원수		
~2020.5월	53개	140명	15개	16명	119백만원	2
2019	54개	126명	15개	15명	1,528백만원	15
2018	30개	88명	15개	27명	1,256백만원	15
2017	30개	86명	15개	31명	1,456백만원	9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여성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

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sup>4)</sup>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라는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3 종합 검토 의견

- 동 위탁 사무는 여성의 취·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 이에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
- 다만,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생활문화 교육이나 수영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전문적인 여성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구분	동부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86㎡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설립	'02.5.1.	'97.12.03.	'79.10.26.	'89.9.8.	'86.12.16.
명칭 · 조직 변경	동부여발 →동부여성플라자 (’05.11) →여성능력개발원 (’07.5) →여능력원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여발 기능 분리·복원(’14.10)	동부여발	구로부녀복지관 →남부여발(’96.9)	노원부녀복지관 →북부여발(’96.9)	마포복지관 →중부여발(’96.9)
운영 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 법인 (대표)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이인자)	(사)대한어머니회 중앙회 (박에스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사)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위탁 기간	'17.10.01.~ '20.09.30.	'17.12.01.~ '20.11.30.	'19.05.01.~ '22.04.30.	'19.05.01.~ '22.04.30.	'18.10.15.~ '21.10.14.
인력	14명 *창플(2명)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0 예산 (백만원)	세입: 1,808 세출: 3,488 ※위탁금:1,680 (여성창업플라자 포함)	세입: 979 세출: 2,037 ※위탁금:1,058	세입: 626 세출: 1,827 ※위탁금:1,201	세입: 827 세출: 2,059 ※위탁금:1,232	세입: 937 세출: 1,954 ※위탁금:1,017